

第215回國會 文化觀光委員會會議錄 第 13 號 (定期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0年12月5日(火)
場 所 文化觀光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법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2. 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3. 국립중앙박물관건립지원소위원회구성의건
4. 國慶日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신기남 의원등 33인 발의)에대한의견제시의건
5.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장성원 의원등 9인외 12인 발의)에대한의견제시의건
6. 政府組織法중개정법률안(李相培 의원등 30인 발의)에대한의견제시의건
7. 靑少年保護法中改正法律案(鄭亨根 의원외 132인 발의)에대한의견제시의건
8.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鄭文和 의원외 132인 발의)에대한의견제시의건

審査된案件

- | | |
|---|----|
| 1. 법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 1 |
| 2. 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 1 |
| 3. 국립중앙박물관건립지원소위원회구성의건 | 2 |
| 4. 國慶日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신기남 의원등 33인 발의)에대한의견제시의건 | 2 |
| 5.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장성원 의원등 9인외 12인 발의)에대한의견제시의건 | 10 |
| 6. 政府組織法중개정법률안(李相培 의원등 30인 발의)에대한의견제시의건 | 10 |
| 7. 靑少年保護法中改正法律案(鄭亨根 의원외 132인 발의)에대한의견제시의건 | 15 |
| 8.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鄭文和 의원외 132인 발의)에대한의견제시의건 | 15 |

(16시15분 개의)

○委員長 崔在昇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국회(정기회) 제13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까.

○立法調査官 李秀用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법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6시16분)

○委員長 崔在昇 의사일정 제1항 법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은 법안을 보다 심도 있

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써 여야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한나라당의 南景弼 위원, 高興吉 위원, 鄭柄國 위원, 새천년민주당의 崔龍圭 위원, 辛基南 위원, 姜成求 위원, 자유민주연합의 鄭鎭碩 위원님 이상 7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새천년민주당의 崔龍圭 위원님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6시17분)

○委員長 崔在昇 의사일정 제2항 청원심사소위원

회구성 의견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 구성은 청원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써 여야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한나라당의 金一潤 위원, 沈揆喆 위원, 새천년민주당의 鄭東采 위원, 沈載權 위원 이상 4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金一潤 위원님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립중앙박물관건립지원소위원회구성 의견

(16시18분)

○委員長 崔在昇 의사일정 제3항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지원소위원회구성 의견을 상정합니다.

동 소위원회는 국립중앙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소위원회로써 여야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한나라당의 鄭柄國 위원, 姜申星一 위원, 새천년민주당의 李美卿 위원, 鄭範九 위원 이상 4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새천년민주당의 李美卿 위원님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건립지원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위원들께서는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은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5000년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 전시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민족문화의 보고이자 우리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로써 의미가 큰 국책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격려로 훌륭한 소위원회 활동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소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4. 國慶日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신기남 의원등 33인 발의)에대한의견제시의견

(16시19분)

○委員長 崔在昇 의사일정 제4항 국경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제시의견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국경일에관

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내용 중에서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었습니다.

국경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법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千浩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首席專門委員 千浩仙 전문위원입니다.

국경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에 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글날 연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한글 창제를 기념한 것은 1926년 11월 4일 조선어연구회 주축으로 음력 9월 29일을 ‘가갸날’로 정하고 기념식을 거행한 것이 최초였으며, 이후 1928년에 명칭이 ‘한글날’로 바뀌고, 1945년에는 날짜를 10월 9일로 확정하였습니다.

한글날은 1949년 법정공휴일로 지정되고 1982년에는 법정기념일로 되었으나, 1990년 공휴일이 너무 많고 특히 10월에 편중되어 있어 산업생산력 저하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 한글날의 법적 위상은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법정기념일입니다.

다음 한글날 국경일 지정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990년 공휴일 축소방침에 따라 한글날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한글 관련 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글날의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 제기와 함께 국경일 지정운동이 전개되어 왔고, 문화관광부에서는 1999년 3월 한글 발전 종합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키는 방침을 확정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들어갔으나 1년 8개월이 지난 2000년 11월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습니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 여야의원 33명의 공동발의로 국경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지난 11월 15일에는 ‘한글날 국경일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이 만들어져 한글창제가 국가 건립과도 같은 상징성을 갖고 있으며 한글날에 광복절 못지않은 의미를 두어야 함을 인식하고 이날을 국경일로 지정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론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9년 한글학회에서 실시한 “한글날의 국경일 제정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74.2%가 한글날을 법정공휴일로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으며, 이들의 95.1%인 전체 응답자의 70.6%가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데 대해 찬성하였습니다.

한글날을 법정공휴일로 다시 지정해야 하는 이유는 “한글날을 기리기 위해서”가 40.7%, “한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가 14.6%를 꼽고 있으며, 반대하는 응답자의 경우 “공휴일의 과다”가 42.6%를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학회 홈페이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글날 국경일 제정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11월 29일 현재 총 2,658명 중 99%가 찬성하는 등 한글날을 국경일로 하자는 주장은 학계와 일반인 사이에서도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경영계에서는 한글날의 국경일 지정은 공휴일이 늘어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저해하고 기업의 생산량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다음 국경일 지정의 당위성 검토를 위하여 한글의 우수성과 한글창제의 문화적 가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은 소리문자 중에서도 말의 소리 하나하나를 하나의 글자로 나타내는 음소문자로서 그 쓰임이 경제적이고 편리할 뿐 아니라 같은 계열의 글자끼리는 동일한 기본요소를 공유하고 있는 조직적·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의 석학들이 이러한 한글의 우수성·과학성을 인정하여 “인류가 쌓은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의 하나”,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 등 높은 평가와 찬사를 하고 있으며, 훈민정음은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국어로 사용되는 문자가 창제된 것은 세계 역사상 한글이 유일하며, 국어가 만들어진 날과 만든 주체·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는 나라 또한 우리나라뿐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문자 창제를 경축하는 국경일이 없다는 사실은 1990년도에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된 바 있으나 이는 오히려 한글날의 유일무이한 가치를 강조하는 데 인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세계 어느 나라도 문자를 언제, 누가 창제한 일이 없었기에 한글날과 같은 경축일을 가질 수 없는 것이며, 그만큼 한글 창제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우리 민족만의 업적이라 하겠습니다.

한글날의 국경일 지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한글날의 가치와 위상에 대한 이견이나 반론은 찾을 수 없으며 다만, 공휴일확대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휴일 수는 68일로 일본·독일·벨기에 등 선진국은 물론 인도·아르헨티나·스페인 등 중진국에 비해서도 턱없이 적은 편일 뿐 아니라, 휴가일수 사용도 적은 실정으로 이러한 우리 현실에서 휴일이 많아 산업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지나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한글날의 문화적 가치는 공휴일 하루분의 산업생산성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며, 아울러 이제 더 이상 경제논리가 문화를 지배할 수 없음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국경일 지정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것은 한글과 한글날에 대한 올바른 자리 매김이며, 이로써 한글에 대한 일반의 관심과 사랑을 높이고 한글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 역량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화의 시대를 맞아 세계 최고의 문화적·학문적 성취인 한글 창제를 기림으로써 문화민족의 긍지를 고취하고 우리의 문화적 저력을 배가한다는 의미도 크다 할 것입니다.

국가정책 측면에서도 한글날의 위상 재정립은 국어정책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며, 이는 한글에 대한 체계적·조직적 연구에 박차를 가하여 정보화에 적합한 한글의 특성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21세기 지식정보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문자 창제일을 국경일로 지정해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것이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리는 효과적 방법이 되며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사람들도 한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인식케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글날은 세계적으로 기념할 만한 날이므로 국경일 지정을 주춧돌 삼아 한글날을 세계가 기념하는 국제적 행사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의 근간이자 상징인 한글이 만들어진 한글날은 개국기념일인 개천절과 국권을 되찾은 광복절에 견줄 만한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로서 이제라도 국경일로 지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해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에 비추어 국경일 지정을 적극 지지하고, 이와 같은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동 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在昇 수고하셨습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辛基南 위원 말씀하십시오.

○辛基南委員 千浩仙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과분하게도 대표발의를 한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니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철학이라고 해도 좋고 심지어는 사상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완전히 일치한다, 그래서 설득력 있는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고 또 제가 국회 5분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것이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됐느냐 또 지금 이 법안이 어떻게 계류되어 있느냐를 설명드리고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님들에게 간절히 당부하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나온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문화계 또 범국민적인 지식인 사회에서 노도와 같이 일었던 일관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것을 대표발의한 저나 공동발의한 삼십여 분의 우리 4당 의원님들만의 의견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문화인들의 한이 지난 10년간, 90년도 당시 노태우 정부 때 고향에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추석연휴를 2일에서 3일로 늘리면서 공휴일 무엇을 하나 없애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찾아낸 것이 한글날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글을 만든 날을 기념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러한 반문화적인 논리가 그대로 통해 버렸고 그 당시 문화계에서는 거국적으로 이에 대한 반발운동이 잇따랐습니다마는 그 여론이 수렴되지 않고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복원운동, 이제 공휴일이 아니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경일로 해야 한다라는 운동이 10년간 있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번번히 보수적인 세력에 밀려서 성사 직전에 좌절되

고 말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우리 국회에 직접 해달라고 호소해서 저희 4당 의원들이 골고루 참여해서 발의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일부러 문광위원님들 말고 다른 위원님들을 많이 참여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여 분 이상의 찬성하는 동의서명을 받아 놓았습니다. 지금 이 법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 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가서 제안설명을 하고 내일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동안 위원님들을 여러 분 만나본 결과에 의하면 반대하는 뜻을 가진 분은 매우 드물게 보았습니다. 이것이 본회의장에만 가면 무난히 통과되지 않나 이런 예상을 하는데 우리 국회 구조라는 것이 어떤 소수가 결정적인 데서 발목을 잡고 있으면 지연되거나 보류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만전을 다해서 어떻게든 본회의장까지 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행자위를 통과하고 또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문화관광위원님들에게 간절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루를 더 쉬느냐 안 쉬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민족의 문화 의식을 가늠하는 아주 중대한 문화적인 대사건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공청회를 했을 때 그 자리에 많은 학자들이 나왔습니다. 초청도 안 했는데 어떻게 소문을 듣고 많이 오셨어요. 지난주에 국회도서관에서 했는데 김동길 박사도 나오시고 전택부 선생남도 나오시고 그분들한테 말씀할 기회를 드렸더니 우리 국회가 정치인들이 이런 일도 하느냐 정말 너무 감격했다 다시 봐야 되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분들이 보기에 우리 정치권이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을 받고 과장되게 나쁘게 알려진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셔서 더군다나 여야 4당 의원님들이 골고루 섞여서 발의하고 많은 분들이 찬동하고 이렇게 해서 활기 있게 추진되고 있다 하는 것을 듣고 스스로 와서 정말 우리나라 정치가 희망이 있구나, 이런 일도 정치권에서 하는구나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국민의 여망이고 우리 문화의 이정표적인 대사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문화관광위원회가 하지 않고 누가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애석하게도 이 문제는 국경일 지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무이고 법사위를 거쳐야 되고 그래서 우리

문광위원님들은 강력히 촉구하는 의견제시를 보내 주시는 것이 내일 행사위 소위법안 심의하는 위원님들에게 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의견제시를 통과시켜 주시고 그뿐이 아니라 실지로 심의하시는 행사위 위원님들 또 법사위 간사님들, 여야를 막론하고 좀 개별적으로라도 가서서, 그분들이 기본적인 취지에는 다 찬동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의구심을 조금씩 갖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가서서 힘을 넣어주시고 의구심을 해소해 주시면 그분들이 주저 없이 용단을 내리실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문광위원님들께서 각당의 잘 아시는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의견제시의 건 의결과 아울러서 잘 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在昇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高興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興吉委員 존경하는 辛基南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원칙적으로 찬동합니다. 다만 저는 그 취지라든가 제정의 당위성, 우수성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이의를 달 생각이 없고 우리 千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라는 것이 때와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꼭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해서 법정공휴일을 하루 더 늘리는 것이 과연 마땅한 일이고 할만한 일이나, 특히 경제적으로 우리가 제일 어려운 때가 아니냐, 지금 IMF위기가 다시 온다 위기감이 돌고 하는 이때에 법정공휴일을 하루 늘린다는 것은 우리 국회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구정을 공휴일로 하는 문제를 놓고 11대 국회에서 당시 국민당 김영광 의원이 제안해서 된 것이 제가 알기에 88년도, 8년 정도 논란을 거듭하다 국무회의에서 몇 차례 좌절되고 다시 심의되다 부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구정이 부활되어서 우리 명절을 되찾은 것은 좋은데 그 이후로 이중과세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명절을 찾았고 그것이 처음 하루로 되었던 것이 사흘까지 늘어났는데 저도 이 문제는 국경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법정공휴일로 해서 공휴일 수를 하루 더 늘린다는 문제

는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국경일로 정해놓고 법정공휴일로 안 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모순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특히 한글날이 법정공휴일에서 그냥 기념일로 변경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법정근로시간이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 5일제 수업이다 주44시간을 주40시간으로 줄인다 노총에서 한참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한글날을 또 하루 쉬는 법정공휴일로 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조류에도 맞지 않는 일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휴일 수를 하루 늘리는 것이 국회가 해야 될 일이나, 물론 솔직히 한글의 우수성이나 창조성, 문화적인 가치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늘어나는 공휴일 하루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어디에 더 비중을 두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조금 이론이 있는데 우리나라 법정공휴일 수가 외국에 비교해 보아도 적다 생각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적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일본이 124일, 인도가 120일, 독일이 118일 등으로 단순비교를 하면 우리나라가 68일로 훨씬 적습니다마는 이들 나라는 이미 주 2일,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연휴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만약 우리나라도 주 5일 추세가 점점 더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가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휴무일도 결국 120일이 되어서 절대로 우리가 적은 것이 아니고, 지금 주 1일만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의 경쟁국들만 보더라도 대만은 69일, 싱가포르가 63일, 이스라엘이 60일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68일이면 이 경쟁국에 비해서도 많은 편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상황이 여러 가지로 악화되고 있는 이때에 공휴일을 늘리는 문제로, 물론 국경일이라는 아주 큰 뜻이 있습니다마는 논쟁을 벌일 때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또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행정부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방침이나 이런 게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아닌가, 이런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는 조금 더, 여러분들 의견이 다 그러시다면 저로서는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표결을 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 이 문제는 그렇게 가볍게 우리가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 뜻을 저희가 찬성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도 조금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봐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在昇 수고하셨습니다.

○姜申星一委員 辛基南 위원 설명 잘 하셨습니다.

저한테는 발의자의 서명날인을 왜 안 받아 갔습니까? 유감이올시다.

○辛基南委員 그것은 문화위 위원 중심이 아니라……

○姜申星一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저의 의견으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저는 절대적인 찬성자의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辛基南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이것이 없어질 당시의 정치적 배경을 보면 군사정권 당시에 영화 제작을 한 하나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5·6공 때 있었던 일입니다. 90년도, 6공 때지요.

그때 저희들이 영화제작을 하면 그때는 우수 작품에 수입쿼터를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영화에 출연했느냐 하면 ‘세종대왕’이라는 작품의 세종대왕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그 제작하는 분이 굉장히 양심적인 분인데 이 작품을 만들면 틀림없이 나라에서 좋아할 것이고 이것은 틀림없이 작품의 그 우수성을 보고 또 한글을 만든 우리 대왕의 업적을 봐서라도 우수 작품으로 선정될 것이라고 하고 전력투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을 이해하는 분들이 정부에 없었어요.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영화의 재미는 좀 떨어졌습니다. 작품을 보면 제작비도 많이 들이고 완성도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느 작품에 작품상이 떨어졌느냐 하면 ‘경찰관’이라는 묘한 작품이 있었는데 로비를 굉장히 세게 했던 그 제작자한테 작품상이 가서 수입쿼터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자가 굉장한 좌절감을 갖고 저도 울분을 터트렸는데 그 배경이 똑같은 배경입니다.

우리가 한자로 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글에 대한 우수성으로, 우리가 한글을 가지고 글을 쓰기

도 하고 지금 이런 유인물도 갖고 있는데 한글날은 국경일로 해야 됩니다. 해야만 한글의 우수성을 계속 우리 후손들한테, 나아가서는 …… 우리가 너무 아름다운 글, 과학적인 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우수성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느 곳이나 경제논리가 앞서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호도당해 버리고, 저도 지역에 내려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문화가 밥 먹여주냐, 이 한 소리에 저로서는 신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논리를 이렇게 앞세우고 있고 경제가 아주 어려울 때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 있는 문화위원만큼은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辛基南 위원님 여러 설명할 것 없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어 가지고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고 또 지금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왜, 늦더라도 발의에 서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한테도 요청해 주시면 서명하겠습니다.

○辛基南委員 위원장님, 한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李美卿委員 보충하시기 전에 제 질의가 있으니까 모아서 해주십시오.

○委員長 崔在昇 수고하셨습니다.

李美卿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李美卿委員 우선 辛基南 위원님 대표발의 하였고 또 저도 발의자 중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고 있는데 저는 이 국경일 지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부터 제안받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辛基南 위원께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벌써 이게 우리 위원회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글날을 국경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10월 9일을 한글날로 꼭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날이 10월 9일로 만들어진 연혁이 쪽 나와 있는데 아마 조선어연구회 주축으로 해서 했는데 그 날이 무슨 날인가가 조금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새로운 제안은 세종대왕 탄신일을 한글날로 잡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안설명에도 들어와 있지만 정말 한글의 우수성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글과 달리 누가 창제했는가, 언제 창제했는가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알려져 있는 이런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날, 할 때 물론 세종대왕이 떠오르기는 하지만 세종대왕의 여러 업적과 더불어서 또 세종대왕을 다시 한번 기리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종대왕을 기리는 그러한 사업과도 연관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세종대왕 탄신일을 한글날로 잡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제안을 제가 듣고 상당히 생각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제안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깊 있게 따져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제안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崔在昇 수고하셨습니다.

辛基南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辛基南委員 우선 李美卿 위원님 말씀에 답하면 훈민정음 해례본이 46년에 실물이 발견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모든 신비가 풀린 것입니다.

거기에 의하면 음력 9월 상한날에 이것을 만들어서 반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포일입니다. 3년 전에 만들었지만 3년간의 시험을 거치고 연구를 해서 3년 후에 음력 9월 상한에 반포했다 그래서 국어학자들이 연구한 끝에 반포가 중요한 것이다, 의미가 있다 해서 그 날을 한글날로 잡았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역산해 보니까 그 날로 딱 납습니다.

세계 역사상 문자가 창제되거나 반포된 날짜가 딱 잡혀있는 나라가 세계에 없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이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우수한 문자가, 이렇게 과학적이고 정말 형태학적으로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말에다가 딱 맞는 가장 풍부한 글자, 이것은 세계적인 기적이다 그래서 세계적인 학자들도 깜짝 깜짝 놀라면서 지금 킹세종상이니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념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포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탄신일로 하는 것은 어쩌나,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좀 개인적인 추앙에 뜻을 두는 것 같고, 세종대왕의 여러 가지 업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분산되는, 초점이 흐려지는 것 같고 저희가 사랑하고자 하는 것은 한글이고 한글 같은 위대한 문자를 창제했다는 그것은 세종대왕 개인의 작업은 아닐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민족의 그만한 문화적 역량을 과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문화역량을 과시하고 사랑하고 기념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글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고 그리고 한글날은 10월 9일, 광복 이후 줄곧 우리가 기념일과 공

휴일을 지켜왔던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운 것이 1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국민의 뇌리 속에는 한글날이 살아있다고 봅니다. 기왕에 관행도 10월 9일 반포일로 잡아왔기 때문에 그날이 더 뜻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高興吉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데 대해서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찬동하시면서도 휴일이 너무 많다 또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염려 그것은 정말 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의 주 원인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말씀하시는 것 중에 생산성이 떨어진다, 너무 노는 날이 많다 이 말씀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한글날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국경일로 기림으로써 얻는 자부심과 혜택에 비해서 하루의 생산성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가치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필이면 왜 이때냐,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난 10년간 계속 해온 말입니다. 이때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 3년 후, 4년 후에도 계속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좋지 않고 도덕적 해이가 있고 이런 말은 요즘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는 말이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40년간, 50년간 요즘보다 더 쉽게 살아 왔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이 특별히 어렵다, 요즘이 특별히 어려울 때다라는 말은 어디에나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10년, 20년 가도 그 말은, 그런 논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정보제공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공휴일 수입입니다.

우리가 과연 며칠의 공휴일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 국민이 정말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쉬고 있느냐 하는 그 순수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볼 때에 우리나라 공휴일 수는 68일입니다.

그런데 익일 휴무제가 없는 드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우리나라는 그 다음날 안 쉽니다. 외국의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쉬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 다음날 꼭 쉽니다. 그

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64일에서 67일까지 이렇게 쉬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본이나 독일, 벨기에 120일이 넘는 중진국들뿐 아니라 다른 나라, 인도도 122일인데 이런 나라도 훨씬 적은 것은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주5일 근무제를 말씀하십니다. 곧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제가 당에서 노동 쪽을 맡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주5일 근무제 이것은 우리 현실에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5일 근무제가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114일에서 117일입니다. 여전히 일본이나 인도나 스페인보다도 적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노동시간을 따져볼 때에 법정 노동시간은 44시간입니다마는 우리 근로자들이 실제 일하고 있는 시간은 48시간입니다. 세계적으로 긴 시간입니다. 말이 좋아서 법정 근로시간 44시간이지 사실 50시간에 육박하는 실제 근로시간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시간은 일본의 38시간, 미국의 40시간 이런 데보다 턱없이 많은 시간이지요.

그리고 휴가일수를 따져봅시다.

우리가 지금 월차휴가, 연차휴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허울 좋은 것입니다. 연차휴가, 월차휴가 찾아먹는 노동자들 거의 없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연차휴가, 월차휴가 12일 정도씩 해서 대개 3일 내지 4일밖에 찾아먹지 못해요.

지금 뭐냐 하면 여름에 3박 4일, 겨울에 3박 4일 했을 뿐이지 우리 국민들은 실제로는 휴가일수를 우리나라 근로자만큼 적게 쓰고 있는 나라가 별로 많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한글날 국경일로 얻는 여러 가지 혜택을 하루 쉬는 8시간 노동의 생산성과 비교한다는 것은 가치부여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우리 근로자들이 얼마만큼의 공휴일을 가지고 있고 노동에 시간을 투여하고 있고 휴가를 즐기고 있느냐를 봐서도 이것은 우리 근로자들에게 노는 날이 많아서, 쉬는 때가 많아서 추가로, 국경일을 늘기 위해서 하는 날은 아닙니다마는 국경일로 지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은 좀 무리한 논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崔在昇 수고하셨습니다.

沈載權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載權委員 저는 오늘 의사일정 보면서 이 문

제가 굉장히 아주 쉽게 넘어가리라고 생각했다가 여러분들이 토론의견 주시길래 저도 제 의견 잠깐 드릴까 합니다.

우선 辛基南 위원님이 너무 잘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해례본에서 밝혀진 대로 반포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역사상 문자가 어떻게 창제됐고 어떻게 제정일자까지 밝혀진 건 처음 있는 일이고 다들 이렇게 옛날 학교 시절에 공부할 때 얼마나 해례본에 나온 우리말의 창제 과정 또 그다음에 하나하나 문자 창안이 과학적이었다, 이런 기억이 새로운데요. 그래서 원안대로 9일로 했으면 좋겠고……

정말 高興吉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측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는 우리 한글날을 국경일로 이렇게 해서 어떤 국민의 문화의식도 높이고 또 주권의식도 높이고 주체의식도 높이고 이런 것이야말로 더욱 필요한 일이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토의를 종결하면 어떨까요?

○委員長 崔在昇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高興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高興吉委員 제가 몇 가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것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존경하는 辛基南 위원님이 더군다나 대표발의자로 되신 이 법 자체에 대해서 그 내용이나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한글의 우수성이랄까 과학성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예찬론자고 사실 당연히 이것은 국경일로 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해도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시점인데 국회가 국경일로 정해서 하루를 더 공휴일을 늘린다 하는 게 과연 이 사회 분위기에 맞느냐?

우리가 하루 노동시간이 어떻고 공휴일 수가 어떻고 이걸 사실 지엽적인 문제고 사회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10월 3일 국경일이고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고 10월 9일날 또 다시 한글날로 해서 공휴일로 된다면 과거에 우리가 10월이 되면 공휴일이 많고 10월은 그저 대충 대충 넘어가는 달 이런 식의 의식이 상당히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하루지만 한글날이 월요일이 돼 가지고 일요일, 월요일 연휴가

된다고 할 때 토요일, 일요일 연휴가 된다면 그 생산성 저하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정하더라도 어느 정도 때를 봐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한글날을 국경일로 해서 즐기고 그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하는 그 여유를 가져도 좀 좋겠다는 이런,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때가 되면 해도 이견 늦지 않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솔직히 한글이 창제돼서 반포된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세종대왕 때니까 이게 벌써 몇백 년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새삼스럽게 우리가 그동안에 그 걸 못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뒤늦게 민족의 주체성을 살리고 자존심을 살리고 이런 여러 가지의 논의의 이유를 대서 하는 걸 꼭 이 시기에 국경일로 정해 가지고 놀도록 해야지 되느냐 하는 그 문제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지 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걸 갖다가 솔선해서 하지 않고 여태까지 10년 정도 미루고 있었을 때는 또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물론 국회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의원입법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문제는 정부 쪽에다가 넣어서 정부로 하여금 국민의 여론수렴도 하고 솔직히 한글학회의 여론조사, 인터넷 여론조사 했지만 우리가 한글학회의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어느 특정기관의 여론조사 가지고 그것을 국민 절대다수가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척도로 삼는 것 자체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입법의 취지에 제가 반대했는 게 아니라 입법의 시기가 아니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것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결론으로 드립니다.

○委員長 崔在昇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李美卿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李美卿委員 시간이 갖지마는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붙이고 싶습니다.

10월 9일말고 세종대왕 탄신일을 한글날로 하자 하는 데 대해서 辛基南 위원님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특히 10월 9일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의해서 반포된 날이다 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이고 보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역사에서 또 우리 문화에서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개인,

영웅 또 역사적으로 추앙받아야 되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인물에 대한 대접,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가 풍성하게 되고 꽃피고 교육적인 효과를 얻고 하는 것이 부족한 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것을 저는 늘 느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키우지 않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듯한 그러한 전통문화가 은연중에 물들어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같은 데는 일부러 인물을 만들어서 우리보다 훨씬 짧은 역사 속에서도 인물을 부각시킵니다. 그 인물을 통해서 역사를 배우게 하고 문화를 배우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역사 속에서 모든 국민이, 우리 민족이 공감하는 그러한 인물들을 찾아내고 그 인물이 펼친 철학, 역사관 또 공적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것을 후세들이 배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인물 중에 우선 첫 손가락으로 꼽으라고 한다면 세종대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의 경우에서도 세종대왕 개인의 작품이나, 그 시대의 문화적인 역량이 만들어 낸 것이다. 이렇게 폄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그 시대의 역사적인, 문화적인 역량과 더불어서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한 정신들이 계승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글 못지않게 그래서 한글날을 우리가 가장 으뜸으로 내세우면서 그야말로 세종대왕이 이끌어 나갔던 여러 과학적인 진흥이라든지 정치적인 법제의 진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아울러서 볼 수 있고 그 인물 자체의,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로서의 덕목 자체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된다면 저는 더 풍성하게 되는 한글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委員長 崔在昇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의견개진이 없으시면 국경일에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은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미 상정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의견제시의 시간이 촉박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미 참조해 주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국경일에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에 포함되지 않은 의견,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개진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모두 포함해서 위원장과 여야간사간에 문안정리를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위임해 주신 것과 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말씀드리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전부 포함해서 의견서를 작성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보내겠습니다.

그 의견개진은 지금 충분히 하셨잖아요.

말씀하시지요.

○辛基南委員 우리高興吉 위원님께서 아주 신중을 기하자는 그런 말씀도 아까 얘기했듯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의견제시는 좀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걸로 나가도록 됐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지금 행사위, 법사위, 본회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도 충분히 논의가 될 것이고 또 법안소위에도 가서 제가 설명할 것이고 또 법사에 가서 얘기도 할 것이고 본회의에서도 얘기할 것이고 충분히 해서 걸러질 것이고 제가 소망하기로는 우리 문화위원회에서는 많은 문화인들의 열렬한 이어 받아서 한 가지로 뜻을 모아주는 그러한 의견제시가 있기를 지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지요.

○委員長 崔在昇 그것은高興吉 위원님이라든가 다른 위원님들께 개개인 의견을 한번 더 물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소수의견은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개개인 또 별도의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또 그것도 우리 여야간사와 협의해서 의견서를 그쪽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때 대표발의자이신辛基南 위원 얘기를 많이 다시 참고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장성원 의원등 9인 외 12인 발의)에대한의견제시의건

6. 政府組織法중개정법률안(李相培 의원등 30인 발의)에대한의견제시의건

(17시08분)

○委員長 崔在昇 의사일정 5항 및 제6항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두 건

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두 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마사회를 농림부와 이관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건의 개정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법률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의견제시의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겠습니다. 千浩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範九委員 6항 관련자료는 배포가 안된 것 같은데요.

○首席專門委員 千浩仙 6항 관련해서는 지난번 저희 위원회 7월달 회의에서 상정이 됐었습니다.

○鄭範九委員 자료는 없습니까?

○委員長 崔在昇 7월달에 배부해 드렸는데 또 있으면 다시 주세요.

○首席專門委員 千浩仙 대체토론까지 다 끝내고 그때 소위가 구성이 안 돼서 저희가 소위로 회부를 못했고……

○委員長 崔在昇 鄭範九 위원님께 7월달의 것 한부 갖다 드리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드리지요.

○首席專門委員 千浩仙 전문위원입니다.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이관 문제에 관한 두 건의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에대한의견제시의건과 관련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쪽 하단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마사회는 당초 농림부 소관으로 되어 있었으나 90년 12월 27일 정부조직법 개정 체육청소년부로 이관된 후 93년 3월 6일 및 98년 2월28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각각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사회의 소관문제는 그동안 정부조직 개편 움직임에 따라 논란이 있어 왔으며 경마의 성격 및 마사회 소관부처 문제, 법률안의 개정형식 그리고 경마관련 제도의 향후 발전방향 등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마의 성격과 한국마사회의 소관문제에 대하여는 서로 상반된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되어 왔습니다.

먼저,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이관을 주장하는 견해로서는 경마는 말을 주체로 하여 말의 능력에 의해 승부가 좌우되는 것이므로 레저스포츠와는 그 성격이 다르며, 현행 한국마사회법에서도 경마

의 목적을 마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경주마의 국내 생산기반 구축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외화절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축산분야 업무를 관장하는 농림부에서 한국마사회를 관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사회를 현행대로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하자는 의견은, 경마는 기수·말·관중이 함께 하는 레저스포츠로써, 말은 경마의 수단과 도구에 불과하고, 경마의 목적은 경주마 생산 등 축산발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여가활용 기회 제공에 있으므로, 공정경마 시행 및 건전 레저스포츠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체육을 관장하는 문화관광부에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마는 기수가 기승한 말의 경주에 승마투표권을 발매하고, 승리마를 적중시킨 고객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레저스포츠로서, 경마의 주목적은 우수경주마 생산 등 축산발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고 즐기는 국민에게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는 레저 및 스포츠산업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말의 기수와 경마고객을 도외시키고 경마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되는 말에만 비중을 두어 농림부 소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마의 목적인 레저와 스포츠의 중요성을 도외시하는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의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마와 경륜·경정 등 국민여가체육활동이 건전하게 시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기능을 2개 부처가 이원화하여 관장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레저스포츠로서의 경마와 그 시행기관인 한국마사회는 현행과 같이 체육을 관장하는 문화관광부의 소관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마의 성격에 대하여는 지난 90년 12월 27일 정부조직법 개정 시 한국마사회를 농림부 소관에서 체육부 소관으로 이관할 때에 이미 정부측 및 국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경마는 레저스포츠임을 확인한 것으로 지금에 와서 이를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국가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습니다.

아울러 경마의 성격을 둘러싼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소관으로의 이관문제는 지난 98년에도 의원입법 발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관련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경마의 레저스포츠로서의 성격을 확

인하고 만장일치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경마발전 및 이익금의 축산 지원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림부 등에서 한국마사회를 농림부 소관으로 하려는 주요 의도는 경마이익금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의 2000년도 경마이익금 사용 현황을 보면, 총이익금 1580억 원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632억 원을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 농어촌복지사업 등으로 158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마이익금의 나머지 50%는 경마사업 확장적립금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92년도에 농림부로부터 한국마사회를 이관 받은 이후, 경마의 공정한 시행 및 건전 레저스포츠로서의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경마고객 및 매출액이 대폭 증가하여 농림부 관장 시에는 경마고객 270만 명, 매출액 8364억 원이었으나 문화관광부 관장이후에는 경마고객 1043만명, 매출액 3조 4200억 원으로서 경마고객은 3.9배, 매출액은 4.1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마고객과 매출액의 대폭적인 신장은 문화관광부가 농림부로부터 한국마사회를 이관 받은 이후, 그동안 마권구입 상한선을 1인 1경주당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비리 소지가 많았던 12개 민간장외발매소의 폐지, 금요경마 폐지, 개인마주제 도입, 경마공원 설치 및 경마문화제 개최, 경마발전위원회 설치 등 공정경마문화의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문화관광부가 한국마사회를 관장하면서 축산 및 농어촌분야에 대한 지원규모도 대폭 확대되었는데, 농림부 관장 시 축산 및 농어촌분야 지원규모가 6년간 360억원에 불과하였으나, 문화관광부 관장 이후 최근 6년간 3669억 원을 지원하여 지원규모가 10.2배로 증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경마 및 한국마사회는 앞으로도 문화관광부에서 관장하여 국민 여가선용과 건전한 레저스포츠로서의 육성·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한국마사회법의 개정형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의 본칙은 안 제36조 제1항에서 농림부장관의 관장사무 중 일부를 원예·특작·식량·농촌개발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다른 법률의 개정과 관한 사항으로 한국마사회법을 개정하여 한국마사회에 대한 소관부처를 변경하는 개정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칙에서 타 법률을 개정하는 입법형식은 본칙 조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다른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방법이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개정과 있어서는 관련되는 인용조문 또는 자구의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개정과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본칙의 개정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국마사회법 관련사항을 부칙으로 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형식은 부칙에 의한 타법 개정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다음 경마관련 제도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법이 1962년도에 제정된 이래 경마의 목적이 마사회 진흥 및 축산의 발전으로 규정되어 이 법 제명 및 목적이 레저스포츠로서의 경마의 특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빈번히 소관부처에 대한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여 온바 차제에 한국마사회법을 발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沈載權 의원 등 23인의 발의로 제출된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의견들은 한국마사회법을 한국경마회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동 법의 목적을 경마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 여가체육활동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경마이익금은 경주마의 육성과 농어촌복지 증진뿐 아니라 경마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지원, 문화복지 향상 등에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마수익의 사회환원을 통하여 경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며, 경영실적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경마에 대한 책임경영체를 도입함과 아울러 공정한 경마시행을 위해 현재 지나치게 낮게 규정된 벌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在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두 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姜申星一 위원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辛基南 위원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申星一委員 지난 일요일 저희 부부가 경마장에 갔습니다. 여러 가지 들어보고, 건전한 레저스포츠에 대한 것을 고취시키고자 갔습니다. 농림부에 이관하고자 하는 것이 전에는 조용하게 있다가 요즘에 이관하자는 소리가 왜 나오느냐 하면, 농촌의 부채문제, 농민들이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니깐, 200여 명 이상의 국회의원 중에서 농촌 출신 국회의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면 농촌의 엄청난 부채가 탕감될 수 있는 이익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농촌지역 출신 의원들이, 약간의 선동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시기적으로 꼭 그렇습니다.

저희 당에 있는 농촌 출신 이분들은 마사회를 가져 가게 되면 엄청난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보면 제시가 있습니다.

千浩仙 전문위원께서 자세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千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리고 여러분한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마사회의 진흥과 축산의 발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마사회 경마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나 하면 마주들입니다. 마주들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말을 갖고 경매에 직접 끼여들게 해서 그분들이 참여하는 마주들, 앞으로 그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경마를 하는 외국의 예를 보면 마주들이 경마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축산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농촌에서 닭을 기르고 돼지를 기르고 소를 길러서 팔고 매매하는 수익을 남긴다는 차원과 말은 다릅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제주도 종마 육성 목장에 갔습니다마는 종마 중에서 최고의 가격이라고 저희에게 보여준 6억짜리 종마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종마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일본 같은 데는 200억짜리 종마가 있습니다. 영국 같이 역사가 오래된 나라도 보면 800억 그런 정도의 종마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아 우리가 WTO 이후에 모든 경제 상황이 개방되고 이렇게 되면, 경마도 개방되는 때에 우리가 경마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때도 옵니

다. 어느 시간에 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만약 우수한 말이 상을 다 따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쉽게 말을 사육해서 농가소득을 올린다는 이런 차원과 다릅니다. 농가의 축산발전에 기여한다 이런 차원과 기술적으로 다릅니다.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주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지금 농민들의 의관을 지켜준다는 데에 대한 축산발전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말의 질이라는 것은 지금 농가에서 질을 높여 가지고 마사회의 진흥이라든지 이런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들께서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특히 千浩仙 전문위원께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셔서 가지고 우리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꼭 갖고 있었고 관장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거기에 오는 고객들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막을 길이 없습니다. 3만 5000석의 관람석을 새로 신축해서 4만 석으로 늘렸으니까 그것이 만약 오픈되면 한 8만 명 가까이, 지금보다 많은 고객이 모여 듭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매출이 3조 5000억에서 예상하기로 한 5조까지 매출이 오를 것으로 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말의 질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생각하는 쉽게 돈축이니 소를 길러서 매매하는 이런 과정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沈載權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굳이 이것을 경마법이라고 바꿀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냥 마사회법이라고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在昇 辛基南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辛基南委員 저는 姜申星一 위원님의 좋은 말씀, 논리가 통하는 그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논리로 해결되는 풍토가 아니라 힘에 의해서, 타성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바로 이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실 번번히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90년도에 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옮겨온 이후 다 그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유가 있어서 왔던 것이고 훌륭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10년간 번번히 문제가 되어 그때마다 국회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론 끝에 우리 문화위원회에 계속 있는 것이 옳다. 이런 결론이 내려져 가지고 넘어간 것인데

이번에 또 이것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심각합니다.

지금 행자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정부는 태도를 못 정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나 하면 굳이 변경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얘기하라고 그러면 얘기를 못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변경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민주당의 97년 대선공약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심지어 민주당의 대선공약이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는 말을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렇다 이것입니다. 한나라당의 공약이 아닌데 그런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논리에 의한 주장이 아니라 이익집단의 요구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요구이고 대선공약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을 충분히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공약이라는 것 이것 100대 공약을 추리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끼워 넣어서 하는데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해도 다 정밀하게 제대로 추려진다고는 말할 수 없지요.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타당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대선공약이었습니까라는 정권 인수의 공약 때는 이것이 공약이행사항에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이 되어서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총선 공약에서도 이것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국무회의에서 여러 번 이것을 가지고 논의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것이 명확하게 결론이 내려져 가지고 이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해서 다 무효화되고 보류되고 이렇게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공약의 의미는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겠고 그리고 농민이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농민 이익과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수익의 대부분은 농축산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렇게 논리에 의해서 결론을 짓지 못하고 이익집단의 요구라든지, 맹목적인 요구라든지 정치적인 일부 농촌지역 의원들의 주장에 의해서 이것이 되면 심각한 반작용이 우려됩니다. 이것은 축산기구가 아닙니다. 축산기구가 될 수 없어

요. 이것은 관광레저시설이고 체육시설이고 이것은 사행성이 있는 일종의 게임입니다. 경정경륜 또 우리가 축구, 농구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체육투표권 이런 것과 같은 이치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산이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말이 있다고 해서 축산진흥산업으로, 말을 다 기르는 것도 아니에요. 다 수입하는 것이지요. 경주용 말을 기르는 가구는 90가구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이것이 무슨 축산산업입니까? 이것이 축산산업으로 취급될 때 초래될 결과는 너무 비능률적일 것이다, 각종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날 것이고 또 이 사업이 퇴보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명분으로 따지면 명확한 일이 정치적인 이유가 개입됨으로 해서 혼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예년과 다르게 막 넘어갈 추세에 있어요. 제가 아무리 가서 해보아야 숫적으로 또 목소리 크기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위원회가 부처이기주의를 떠나서 이 사업의 올바른 시행과 장래를 위해서 강력한 결의와 경고를 행사위해다가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모아서 행정자치 위원회에 보내고 그것만으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각 위원님들이 각 정당에 가서 지도부를 상대로 해서, 지금 그분들을 만나 보면 논리나 명분이 없어요. 잘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무조건 얘기만 하는 것이에요. 이런 풍토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려할 만한 풍토입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자꾸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서 올바른 방향을 찾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在昇 鄭鎮碩 위원 말씀하십시오.

○鄭鎮碩委員 저는 마사회의 소관 부서 변경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귀착점이 어디냐를 떠나서 일단 문화관광부와 마사회가 그야말로 겸허하게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추곡수매 현장에서 농민들과 함께 일을 하다 온 그런 입장입니다. 그야말로 농촌의 현실은 정말 처참합니다. 아마 장관님이나 신임 회장이 와 계시겠지만 차관께서 농촌에 한번 들른 적이 있으십니까? 농촌에는 정말 농민들의 탄식밖에 없습니다. 피폐될 대로

피폐되어 있어요.

마사회가 경영 잘 한다고 신문에 한 줄 난 적이 있어요? 항상 마사회 하면 북마전이다, 방만한 경영이다, 쉽게 벌어서 쉽게 쓴다, 마사회 이익금을 가지고 농가부채가 탕감이 안 되는 것 알아요. 농민들도 압니다. 그러나 마사회 이익금의 상당 규모가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쓰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사회 운영이 그렇게 방만하고, 쉽게 벌어서 쉽게 쓰고,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피 같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에게 돌아올 피 같은 돈을 함부로 쓴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마사회 경영이 방만하다고 신문에 한 줄 나오면 농민들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박탈감과 상실감이 심한 것입니다. 그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내일 모레 또 고속도로를 점거해서, 옛날 같으면 민란이고 봉기입니다. 이 정부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이게 어느 부서로 가서 관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마사회 신임 회장이 여기에 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장관께서도 엄정하게 관리 감독 잘 하셔야 됩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게 소관부처 싸움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이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문화관광부나 마사회가 정말 뼈를 깎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결국 국민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마사회 경영이 방만하다는 이런 주장이 나오지 않게끔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崔在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南景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南景弼委員 마사회 운영이 방만하다는 鄭鎮碩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와 마사회 측에서는 겸허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辛基南 위원님이나 姜申星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사회가 농림부로 이관된다고 해서 농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도움이 더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중언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더 첨언할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사행성 사업이 굉장히 확대일

로에 있습니다. 경륜, 경정, 복권, 카지노, 경마 문제도 역시 문화관광부에서 이 부분을 확대하는 일로가 아니라 이것을 좀더 규제하고 사행성 사업이 번창하지 않는 방향으로 충분하게 그리고 아주 엄격하게 처리과정이나 시행과정에서 한 부처에서 이것을 관장해야 된다는 그러한 주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委員長 崔在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沈載權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權委員 마사회 소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마사회법개정안을 낸 위원으로서 또 저희 당 공식 모임에서 마사회가 문화관광부에 속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했던 한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지금 농어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우선권이 주어지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명백히 원칙적인 사항이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이것이 레저스포츠라는 것은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농가지원 문제는 별도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고 또 추진되어야 합니다마는 이 문제가 밥그릇 다툼이 아니라 레저스포츠 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신 의견대로 우리 위원회 입장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崔在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崔龍圭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崔龍圭委員 저도 다른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존중하면서, 장관께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일간지에 보면 게임산업 분야에 관해서 정통부와 또 어느 분야는 산자부 쪽하고, 문화가 워낙 다의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많은 부분이 더 부딪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아예 근원지부터 싸울 자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문화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행정 각 부에 퍼져 있는 사항들이 다 가져가겠다고 나서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부차원에서 정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崔在昇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위원장과 여·야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위임해 주시는 것과 그 의견서를 각각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靑少年保護法中改正法律案(鄭亨根 의원의 132인 발의)에대한의견제시의건

8.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鄭文和 의원의 132인 발의)에대한의견제시의건

(17시39분)

○委員長 崔在昇 의사일정 제7항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과 의사일정 제8항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두 건은 정무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 각각 회부된 법률안의 내용 중 청소년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법률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千浩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首席專門委員 千浩仙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정책 기능을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일원화했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종합적인 청소년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현행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문화관광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청소년정책 및 보호업무와 육성업무를 국무총리 소속의 청소년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조직개편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보호·육성 기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 온 것으로 압니다마는 정부에서는 문화관광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육성과 보호기능을 분리 담당하고 있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여 이번 정부제출 법률안에는 이를 반영시키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발의 법률안인 이번 개정법률안의 청소년정책의 통합·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는, 청소년보호정책과 청소년육성정책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주무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적이고 보완적인 업무수행이 어렵고 부처 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어 청소년업무의 총괄조정기능이 미흡하며 효율적인 정책수행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실을 도외시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첫째, 일원화가 능률적 효율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였으나 육성업무와 보호업무의 특성을 도외시키고 있습니다. 육성업무는 건강한 심신단련을 위한 문화적 체육적 수련활동인 데 비해, 보호업무를 술, 담배, 음란물 등으로부터 차단하는 규제·단속활동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육성업무는 전체 청소년업무의 90%를 점하며 청소년들을 학교 외에서 정서적 신체적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무로서 집행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청소년위원회에서 처리할 업무가 아닙니다. 문화관광부의 고유업무인 문화·체육·관광의 각종 시설과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화관광부에서 관장해 온 것입니다.

셋째, 청소년보호업무는 다양한 청소년업무 중에 청소년을 술, 담배, 음란물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규제·단속하는 업무를 별도로 분리한 것입니다. 이는 유해업주나 업소에 대한 단속요원들의 전국적인 단속활동이 핵심이 되는 일종의 사법적 성격을 띤 업무입니다.

넷째, 업무의 특성상 총리실의 위원회로 일원화해서는 집행기능의 부실로 인해 기존 청소년육성업무를 크게 후퇴시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정책기능을 청소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은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불합리하며 청소년에 대한 보호·규제보다는 선도·육성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오히려 청소년 업무를 문화관광부로 일원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在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沈載權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沈載權委員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석전문위원 말씀대로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로서 분명한 반대의견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지난 국정감사 중에도 이 문제에 관해서, 현재 총리실 산하 위원회로 단일화되는 것이 보호·육성보다는 선도·규제 이런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반대의견을 낸 바 있고 또한 현행 청소년보호법 자체도 2차 심의규정이란가 또는 유해매체물 규정이란가 오히려 이런 것이 개정되어서 더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문화적 활동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그러한 본질적인 문제, 개정되어야 될 문제는 전혀 언급함이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도·규제 위주의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분명한 반대의견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在昇 존경하는 南景弼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鄭範九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南景弼委員 사실 본 위원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15대 때부터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나 상임위 또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금 청소년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짚어질 청소년의 자화상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암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계속해서 청소년정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일원화가 정무위원회 소속이 되어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습다. 단지 저는 일원화되어서 예를 들면 청소년부라든지 청소년처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부처가 신설되어서, 지금 정부 내 17개 부처에 청소년 관련 업무가 산재되어 있는데 이 산재된 모든 기능을 모아서 청소년 문제가 정말 미래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정부의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단지 어느 곳으로 가든지 간에 일원화되어서

효율적으로 통합운영될 수 있도록, 이것이 통과되기 전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부가 신설되는 것이 좋을지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다시 한번 공청회 등이 개최되어서 다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崔在昇 鄭範九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範九委員 기본적으로 지금 유인물로 내놓은 문화관광부의 반대입장에서도 그렇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단순히 어느 부처로 일원화하는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청소년정책의 기본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그 업무성격상 청소년을 보호라는 명목하에 일단 규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보는데 익숙해 있는 정책을 실시해 왔다고 보고, 문화관광부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 보호·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청소년정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청소년’ 하면 자율능력에 대한 불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호라는 명목하에 청소년들을 감시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강하게 갖습니다.

청소년을 사회적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는 존중받아야 합니다마는 이 사회 전체가 유해환경 속에 포위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청소년만이 사회로부터 딱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현실을 인식한다면 보다 현실적으로 청소년들도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한 예비 시민으로 바라보고 이들을 규제나 감시의 대상보다는 육성·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을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 청소년업무를 일원화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이런 점에서 일단 문화관광부로 일원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이 청소년업무는 가족정책 차원에서 앞으로 신설될 예정인 여성부로 이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 이렇게 부처 간에 일원화 논의가 될 때는 육성·발전이라는 기본방향에서 있는 문화관광부로 업무를 일원화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 기회를 빌려서 문화관광부가 청소년 문제와 청소년정책을 일원화해서 책임지는 기구로

되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1세기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자율적이고 창의성 있는 시민으로 청소년들을 키워내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다 전 국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在昇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은 위원장과 여야간사에게 문안정리를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위임해 주시는 것과 그 의견서를 각각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金한길 장관과 문화관광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7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 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出席委員(17人)

姜 成 求 姜申星一 高興 吉 南景 弼
辛 基 南 申 榮 均 沈 揆 喆 沈 載 權
尹 鐵 相 李 美 卿 鄭 東 采 鄭 範 九
鄭 柄 國 鄭 鎮 碩 崔 龍 圭 崔 在 昇
玄 敬 大

○出席專門委員

수 석 전 문 위 원 千 浩 仙
전 문 위 원 金 宗 鉉

○政府側參席者

문화관광부
장 관 金 한 길
차 관 金 順 珪
차 관 보 李 弘 錫
기 획 관 리 실 장 朴 文 錫
중 무 실 장 金 順 吉
문 화 정 책 국 장 吳 志 哲
예 술 국 장 盧 太 燮
문 화 산 업 국 장 林 炳 秀

관 광 국 장	朴 良 雨
체 육 국 장	裴 鍾 信
청 소 년 국 장	鄭 鎭 宇

○所屬機關參席者

국립국어연구원장	沈 在 箕
----------	-------

○傘下團體參席者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金 正 鈺
------------	-------

【報告事項】

○議案回附

文化藝術振興法中改正法律案(정범구 의원 발의)

(11월30일, 정범구 의원의 21인 발의)

12월4일자 회부됨

放送法中改正法律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12월2일, 정병국·고홍길·강신성일·김원웅

·김일윤·남경필·신영균·심규철·조용규·

현경대 의원의 19인 발의)

12월5일자 회부됨